

< 2025년 관세법령 개정사항 I - 교재순 >

구민회 관세사

- ★ 2025년 1월1일 전까지 개정된 법률 총정리
 - 교재순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본서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하세요)

-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시험전까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1차시험과 상관없는 법 개정사항은 배제함.

1. 구민회 관세법 - 과세편

● 교재 36페이지 ★ - 표현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1. 신고서류의 보관</p> <p>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1. 신고서류의 보관</p> <p>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p>

● 교재 245페이지 ★ -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4) 세액심사</p> <p>1) 세관심사</p> <p>①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 - 원칙</p> <p>②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 - 예외</p> <p>③ 신설</p>	<p>(4) 세액심사</p> <p>1) 세관심사</p> <p>①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 - 원칙</p> <p>②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 - 예외</p> <p>③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납세신고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 **교재 256페이지 ★★★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상향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4)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법 제42조) 세관장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기2.(2)② 납부지연가산세(가+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4)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법 제42조) 세관장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기2.(2)② 납부지연가산세(가+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 **교재 257페이지 ★★★ - 무신고 일부 가산세율 상향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①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 (밀수출입죄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p>	<p>①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 (밀수출입죄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p>

● **교재 294페이지 ★★★ - 무신고 수입물품 제척기간 연장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p> <p>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p>	<p>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p> <p>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p> <p>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법제16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 7년</p> <p>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p>

● **교재 312페이지 ★ -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4) 확인</p> <p>한국은행은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4) 확인</p> <p>한국은행은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u>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u>)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 **교재 314페이지 ★★ - 반입장소 통관우체국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1)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p>	<p>1)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p>㉢ 통관우체국</p>

● **교재 350페이지 ★★ - 공장자동화 감면율 하향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 100분의 30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p>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 100분의 50</p>	<p>㉢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 100분의 30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p>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 100분의 30</p>

● **교재 386페이지 ★ - 중복조사 가능사유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u>상기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구민회 관세법 - 통관편

● **교재 9페이지 ★ - 입항보고시기 고시규정으로 변경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1) 입항보고</p> <p>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p> <p>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p>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p> <p>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 교재 10페이지 ★ - 출항허가시기 고시규정으로 변경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1) 의의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의의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u>출항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p>

● 교재 17페이지 ★ - 하역제한규정 고시규정으로 변경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4) 하역제한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하역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4) 하역제한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u>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u></p>

● 교재 40페이지 ★★ - 보세장치원칙 내국물품삭제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p>(1) 외국물품 등의 보세구역 장치원칙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p>	<p>(1) 외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원칙 <u>외국물품은</u>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 **교재 52페이지 ★★ - 보세사 행정제재 세부기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4) 행정제재</p> <p>세관장은 등록된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의 취소,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견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① 및 ②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①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 ② 사망한 때 ③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4) 행정제재</p> <p>세관장은 등록된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의 취소,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견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① 및 ②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①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 ② 사망한 때 ③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u>상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u></p>

● **교재 66페이지 ★★★ - 보세창고 내국물품장치기간 연장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② 내국물품(③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p>	<p>② 내국물품(③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u>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 **교재 88페이지 ★ -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요건</p> <p>세관장은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p> <p>다만, 세관장은 법 제196조제2항(입국장면세점)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요건</p> <p>세관장은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p> <p>다만, 세관장은 법 제196조제2항(입국장면세점)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p>

● **교재 109페이지 ★ - 유치대상 중 지식재산권 범위확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p>	<p>◎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p>

● **교재 112페이지 ★ - 반출공고규정 고시규정으로 변경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① 반출통고</p> <p>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p>	<p>① 반출통고</p> <p>세관장은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p>

● 교재 147페이지 ★ - 내국운송 세부규정 신설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1. 의의 2. 내국물품의 운송절차 3. 준용규정	1. 의의 2. 내국물품의 운송절차 3. 준용규정 4. 세부규정 <u>상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 교재 166페이지 ★★★ - 수출입제한대상에 마약류 신설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1. 수출입의 금지 2.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1. 수출입의 금지 <u>1-1. 마약류 등의 수출입제한</u> <u>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u> 2.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교재 170~174페이지 ★ - 지식재산권 명칭 수정 (변경)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수정

● **교재 170페이지 ★★★ - 지식재산권 방위산업기술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1) 관세법상의 보호대상</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p> <p>① ~ ⑥</p>	<p>(1) 관세법상의 보호대상</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지식재산권 등</u>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u>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 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u></p>

● **교재 172페이지 ★★★ - 지식재산권 방위산업기술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② 통관보류 또는 유치조치</p> <p>통관보류나 유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p> <p>㉠ ~ ㉡</p>	<p>② 통관보류 또는 유치조치</p> <p>통관보류나 유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p> <p>㉠ ~ ㉡</p> <p><u>㉢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u></p> <p><u>㉣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u></p> <p><u>㉤ ㉠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u></p>

● **교재 193페이지 ★ -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부규정 신설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1)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p> <p>(2) 원산지증명서 내용확인</p>	<p>(1)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p> <p>(2) 원산지증명서 내용확인</p> <p>(3) 세부규정</p> <p><u>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u></p>

● **교재 204페이지 ★ - 검사세부규정 구체화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② 검사의 기준</p> <p>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② 검사의 기준</p> <p>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u>검사방법, 검사 장비·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 **교재 209페이지 ★★ - 신고필증 발급수령에 화주 추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5) 신고의 수리</p> <p>① 의의</p> <p>세관장은 수입(수출 또는 반송)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p>	<p>(5) 신고의 수리</p> <p>① 의의</p> <p>세관장은 수입(수출 또는 반송)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u>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p>

● **교재 258~259페이지 ★★ -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p> <p>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p> <p>1. ~ 6.</p>	<p>(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p> <p>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u></p>

● 교재 266페이지 ★★ - 무기의 휴대 및 사용 타법 준용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1) 무기휴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p>	<p>(1) 무기휴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p>
<p>(2) 무기의 종류 세관공무원이 직무집행으로 필요시 휴대 가능한 “무기”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를 말한다.</p>	<p>(2) 무기 사용요건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p>
<p>(3) 무기사용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 교재 274페이지 ★★ - 오타 정정

전	후
<p>(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p> <p>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전자문서 관련 범죄</p> <p>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p> <p>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p> <p>③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p>	<p>(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p> <p>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전자문서 관련 범죄</p> <p>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①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p> <p>②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p> <p>③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p>

● **교재 276페이지 ★★★ - 가격조작죄 벌금규정 신설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4. 가격조작죄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 신청 (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법 제241조 제1항·제2항(수출입, 반송신고)에 따른 신고 (4) 법 제244조 제1항(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신고</p>	<p>4. 가격조작죄 (1) 처벌대상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아래 (2)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 신청 (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법 제241조 제1항·제2항(수출입, 반송신고)에 따른 신고 (4) 법 제244조 제1항(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신고</p> <p>(2) 벌금형 산정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다.</p> <p>① 5천만원 ② 물품원가 ③ 다음 ㉠ 및 ㉡ 간의 차액</p> <p>㉠ <u>상기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u> ㉡ <u>과세가격(법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u></p>

● **교재 276페이지 ★★★ - 타인의 명의사용자 처벌 강화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7.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행위죄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 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p>	<p>7.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행위죄</p> <p><u>(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u>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u>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u> <u>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u></p> <p><u>(2)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를 허락한 자</u> <u>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 **교재 322페이지 ★ - 시행령 내용 구체화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11. 기타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1.에 따른 통계, 3.에 따른 통계자료, 4.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9.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1. 기타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1.에 따른 통계, 3.에 따른 통계자료, 4.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u>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u> 9.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교재 322페이지 ★ - 준용규정으로 개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4. 기타</p> <p>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준용규정</p> <p>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u>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제6항·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u></p>

● **교재 334페이지 ★ - 한국관세정보원 검사 등 규정 신설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9) 지도·감독</p>	<p>(9) 지도·감독</p> <p>(10) 검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 <u>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11) 시정명령 조치 <u>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 **교재 341페이지 ★ - 세관장의 권한 위탁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4. 세관장의 권한의 위탁</p> <p>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제158조 제2항(보수작업 승인), 제159조 제2항(해체·절단 등의 작업 허가), 제165조 제3항(보세사 등록), 제209조(매각 전 통고), 제213조 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보세운송물품검사),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22조 제1항 제1호(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제246조 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업무를 다음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1) ~ (4)</p>	<p>4. 세관장의 권한의 위탁</p> <p>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제158조 제2항(보수작업 승인), 제159조 제2항(해체·절단 등의 작업 허가), 제165조 제3항(보세사 등록), 제209조(매각 전 통고), 제213조 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보세운송물품검사),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u>제222조 제1항(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제3항(영업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제5항(등록의 유효기간)</u> 및 제246조 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업무를 다음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다만, 제222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보세운송업자) 및 제2호(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 **교재 342페이지 ★ - 위탁가능 업무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5.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위탁</p> <p>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 (4)</p>	<p>5.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위탁</p> <p>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u>(1) 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보세사시험업무</u> <u>(2) ~ (5) <기존 (1) ~ (4)와 같음></u></p>